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 증빙서류 안내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은 그 사유가 동일하더라도 매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서류 발급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하여야 하며, PC화면 캡처는 서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안내 서류 중 사유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어 기간이 정확히 확인될 경우에만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로 심사됩니다.

※단, 매 해 관련 법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중 발췌)

### 6. 치과위생사

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 1)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호선
- 2) 불소도포
- 3)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 4) 임시충전
- 5) 임시부착물의 장착
- 6) 부착물의 제거
- 7)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침착 물
- 8) 치아 본뜨기

나.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014년-2016년

구분	대상구분		증빙서류	
면제	1. 당해 연도 내에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b>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b>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전속, 비전속 근무자 모두 포함)	1-1 미취업/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서류 상 지역 혹은 피부양자 가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1-2 의료기관 휴직자	휴직확인서 (개인정보, 병원정보, 휴직기간명시, 소속기관장의 직인 포함된 서류)	
		1-3 면허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타 업무 종사자)	재직증명서와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는 동 공지사항에 첨부된 양식 참조)	
		1-4 대학교 치위생(학)과 소속(전임, 초빙)교수, 조교 (단, 외래교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재직증명서 ※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대학 강의를 겸임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1-5 해외근무 및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2. 군복무 중인 자 (군 의무복무 중인 자)			입영날짜가 기재된 병적 증명서 ※ 군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6개월 이상 복무한 해만 면제 가능
3. 치위생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대학생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학사편입 재학생 포함) (단, 1년 내에 해당 대학원에 2학기 이상 수료한 자)			해당년도 2학기 이상 수료함이 확인되는 서류 (ex: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4. 신규면허 취득자			면허증 사본, 국가시험 합격확인서 (합격확인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5.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협회문의	
유예	1. 입원중인 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 유예사유 해소 시 유예 하였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2.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협회로 문의		

○2017년-2018년

구분	대상구분		증빙서류
면제	1. 당해 연도 내에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b>6개월 미만</b> 이면서 <b>1년 미만의 기간동안 치과위생사 업무에 미종사 후 업무 복귀자</b> (전속, 비전속 근무자 모두 포함) ※ 해당년도에 미 종사 이후 1번 이상 업무에 복귀한 자	1-1 미취업/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서류 상 지역 혹은 피부양자 가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1-2 의료기관 휴직자	휴직확인서 (개인정보, 병원정보, 휴직기간명시, 소속기관장의 직인 포함된 서류)
		1-3 면허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타 업무 종사자)	재직증명서와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는 동 공지사항에 첨부된 양식 참조)
		1-4 대학교 치위생(학)과 소속(전임, 초빙)교수, 조교 (단, 외래교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재직증명서 ※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대학 강의를 겸임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1-5 해외근무 및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2. 군복무 중인 자 (군 의무복무 중인 자)		입영날짜가 기재된 병적 증명서 ※ 군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6개월 이상 복무한 해만 면제 가능
	3. 치위생전공 관련 대학원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학사편입 재학생 포함) (유사전공 신청불가)		해당년도 1학기 이상 수료함이 확인되는 서류 (ex: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4. 신규면허 취득자		면허증 사본, 국가시험 합격확인서 (합격확인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5.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5-1 2018년 출산자	2018년 출산일이 확인이 되는 서류 제출. 단, 여성만 가능 (ex: 출생증명서)
		5-2 그 외	협회로 문의

유예	1. 입원중인 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2.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협회로 문의		
	3. 2017년 육아휴직인 자	2017년 1월1일~12월31일 육아휴직이 확인되는 육아휴직확인서 (개인정보, 병원정보, 휴직기간명시, 소속기관장의 직인 포함된 서류)		
비대상	당해 연도 내에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b>6개월 미만</b> 이면서 <b>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치과위생사 업무에 미종사 후 해당년도 내 업무 미복귀자</b> (전속, 비전속 근무자 모두 포함)	1-1 미취업/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서류 상 지역 혹은 피부양자 가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유예 및 비대상 사유 해소 시 유예 하였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1-2 의료기관 휴직자	휴직확인서 (개인정보, 병원정보, 휴직기간명시, 소속기관장의 직인 포함된 서류)	
		1-3 면허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타 업무 종사자)	재직증명서와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는 동 공지사항에 첨부된 양식 참조)	
		1-4 대학교 치위생(학)과 소속(전임, 초빙)교수, 조교 (단, 외래교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재직증명서 ※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대학 강의를 겸임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1-5 해외근무 및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2019년~

구분	대상구분		증빙서류		
면제	1. 치위생전공 관련 대학원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학사편입 재학생 포함) <b>(유사전공 신청불가)</b>		해당년도 <b>1학기 이상 수료</b> 함이 확인되는 서류 (ex: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2. 군복무 중인 자 (군 의무복무 중인 자)		입영날짜가 기재된 병적 증명서 <b>※ 군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b> <b>6개월 이상 복무한 해만 면제 가능</b>		
	3. 신규면허 취득자		면허증 사본, 국가시험 합격확인서 (합격확인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4-1 출산자	출산일이 확인이 되는 서류 제출. 단, 여성만 가능 (ex: 출생증명서)		
4-2 그 외		협회로 문의			
유예	1.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b>치과위생사 업무</b> 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전속, 비전속 근무자 모두 포함)		1-1 미취업/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서류 상 지역 혹은 피부양자 가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유예 사유 해소 시 유예 하였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1-2 면허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타 업무 종사자)	재직증명서와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는 동 공지사항에 첨부된 양식 참조)	
			1-3 대학교 치위생(학)과 소속(전임, 초빙)교수, 조교 (단, 외래교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재직증명서 <b>※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대학 강의를 겸임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b>	
			1-4 해외근무 및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2.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1 의료기관 휴직자	휴직확인서 (개인정보, 병원정보, 휴직기간명시, 소속기관장의 직인 포함된 서류)		
		2-2 그 외	협회로 문의		